

이사회 규정

에어부산(주)

이사회 규정 운영표

주관부서	제정/시행 일자	제정권자	개정권자
인사총무팀	2018.08.02	대표이사	이사회

개정기록표

개정순차	개정일자	주요개정조항	개정사유
1차	2020.04.07	제10조, 1항, 다, (15).	신설(필요항목)
2차	2025.07.23	규정운영표, 개정기록표, 목차 반영	신설(규정관리)
		제5조, 1~2항.	개정(지배구조 개선)
		제6조, 2항.	개정(내용수정필요)
		제7조, 1~2항.	개정(내용수정필요)
		제10조, 1항, 나, (8)	신설(필요항목 추가)
		제15조, 2항.	개정(내용수정필요)
3차	2026.04.21	제16조(이사회 지원)	신설(이사회 전문성 향상)
		제4조(구성)	개정(내용수정필요)
		제10조(부의사항)	신설(필요항목 추가)

[목 차]

1. 목적	1
2. 적용범위	1
3. 권한	1
4. 구성	1
5. 의장	1
6. 종류	1
7. 소집권자	1~2
8. 소집절차	2
9. 결의방법	2
10. 부의사항	2~5
11. 이사회 내 위원회	5
12. 감사의 출석	5
13.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	5
14. 의사록	6
15. 간사	6
16 이사회 지원	6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에어부산 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

제3조(권한)

1.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
2. 이사회는 제 13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

제4조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

제5조(의장)

1.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 선임한다
2. 의장이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장이 사전에 정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의장이 사전에 직무 대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이사, 선임이사,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

제6조(종류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
2. 정기이사회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
3.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

제7조(소집권자)

1.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의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

2.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

제8조(소집절차)

1.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에 대하여 통지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발송하여야 한다
2.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

제9조(결의방법)

1.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
2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
3.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4.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

제10조(부의사항)

1.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
 - 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3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 - (4) 정관의 변경
 - (5) 자본의 감소
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9) 이사,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 위원)의 선임 및 해임
- (10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1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2) 현금배당 결정
- (13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4) 이사, 감사의 보수
- (15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보고 (관련조문) 상법 제542조의9 제3항 내지 제5항(주석변경 2009.2.4)
- (16)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7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나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
- (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공동대표의 결정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8)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개정 및 폐지
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10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11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다.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투자에 관한 사항
- 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- 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(4) 결손의 처분
- 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- 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- (13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4) 자기주식의 소각
- (15) 자금 운영 시 ①신용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확정배당 상품 ②국.공채, 지방채, 통안증권, 정부보증채권 ③만기 1년 이하의 AA등급 회사채 이외의 금융상품을 취득하는 경우
- (16)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

라. 이사 등에 관한 사항(개정 2012.4.2)

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1-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- (2) 타회사의 임원 겸임

마. 기 타

- 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

가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나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(또는 감사위원회)가 인정한 사항

다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11조(이사회 내 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

2.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

가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나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다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라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3.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

4.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

5.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

제12조(감사의 출석)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

제12조의2(관계인의 출석)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

제13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

1.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

2.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

제14조(의사록)

1.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단,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생략된다
3.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
4.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

제15조(간사)

1.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
2. 간사는 이사회 주관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

제16조(이사회 지원)

1. 회사는 이사가 외부기관의 법률, 회계, 경영자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

부 칙

부 칙 (2026. 4. 21. 개정)

제1조 제4조의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

제2조 제10조의 신설 규정은 202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